식품 등의 표시・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약칭: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)



[시행 2023. 1. 1.] [총리령 제1813호, 2022. 6. 30., 일부개정]

식품의약품안전처 (식품표시광고정책과) 043-719-2182

제6조(영양표시)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"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"이란 별표 4의 식품등을 말한다.

-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.
- 1. 열량
- 2. 나트륨
- 3. 탄수화물
- 4. 당류[식품, 축산물, 건강기능식품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(單糖類)와 이당류(二糖類)를 말한다. 다만, 캡슐・정제・환・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]
- 5. 지방
- 6. 트랜스지방(Trans Fat)
- 7. 포화지방(Saturated Fat)
- 8. 콜레스테롤(Cholesterol)
- 9. 단백질
- 10.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
- ③ 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.
- 1. 영양성분의 명칭
- 2. 영양성분의 함량
- 3.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
- ④ 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3에 따른다.<신설 2021. 5. 27.>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양성분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<개정 2021. 5. 27.>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